

2023년 국가대표 트레이너 채용 재공고

2023년 국가대표 트레이너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6월 10일(토)

대한장애인탁구협회

1. 채용분야

채용직	채용직무	인원	담당직무
2023년 국가대표 트레이너	트레이너	1명	- 국가대표 지도자 및 선수를 지원하기 위해 체력, 기술, 영상분석, 훈련장비 관리

2. 응시자격

트레이너	1. 트레이너는 해당 분야의 전문 자격(물리치료사/각 트레이너 양성 단체에서 발급한 트레이너(AT)/건강운동관리사(前 생활체육지도자 1급(운동처방분야))/안마사(대한안마사협회))을 보유하여야 한다. 2. 제1항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을 선발할 경우 2년 이상의 해당 분야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어야 하고 해당 분야 및 장애인스포츠지도사, 전문스포츠지도사,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이 있는 사람을 선발하도록 권장한다.
------	---

3. 결격사유(국가대표 선발 규정 제10조)

제10조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.

- 「국가공무원법」제33조(결격사유)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<개정 ‘19.6.19.’>
- 장애인체육회 또는 가맹단체에서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, 약물사용 허용 또는 부추기는 행위로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자 <개정 ‘19.6.19.’>
-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·시군구 종목단체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사람 <개정 ‘19.6.19.’>
 - 폭력, 성희롱·성매매 또는 성폭력과 관련된 비위 행위(강간·강제추행 포함)로 자격 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<개정 ‘20.10.29.’>
 - 승부조작, 편파판정, 국가대표 및 강화훈련 선수 선발과 관련한 불공정 행위(부정선발, 담합, 금품수수), 횡령·배임 행위로 자격정지의 징계를 받은 사람 <개정 ‘20.10.29.’>

- 다. 가목과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
4.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·시군구 종목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<개정 '19.6.19.>
5.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·시군구 종목단체가 주최·주관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「형법」 제314조 및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47조 및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<신설 '19.6.19.>
6. 음주운전 등과 관련한 행위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의 처벌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(형이 실효된 자를 포함한다) <신설 '20.10.29.'>
- 가.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
 - 나. 5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
7. 도박과 관련된 행위로 형법 제246조 또는 제247조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(형이 실효된 자를 포함한다) <신설 '20.10.29.'>
- 가. 1천만원 초과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
 - 나.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
8. 가맹단체(시도지부 포함)의 회장, 부회장, 전무이사의 경우 국가대표 지도자를 겸직할 수 없고, 상기 직위를 사임한 경우라도 사임 후 2년 동안은 국가대표지도자로 선발될 수 없음
9.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체육인의 품위를 손상시킨 자 <개정 '19.6.19.>

4. 채용조건

- 계약기간 : 2023년 국가대표 훈련 및 대회 참가 기간
- 훈련기간 : 2023년 7월~11월 예정 [약 5개월]
 - 2022 항저우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(2023년 10월 22일~10월 28일) 포함
- 급여 : 수당 지급 원칙(대한장애인체육회 훈련예산 집행지침에 따름)
 - 1일 10만원(소득세법에 따른 월천정수 적용)
- ※ 훈련기간에만 수당이 지급되며, 상기 채용조건은 대한장애인탁구협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사업계획 등에 따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- ※ 국제대회 참가와 관련하여, NPC의 종목별 AD 배정에 따라 참가가 불가할 수 있음

5. 채용방법

- 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, 2차 면접전형 실시 후 최종선발
- 「국가대표 선발 규정」에 의거하여, 전문체육위원회에서 후보자 평가 및 결과를 심의·추천, 가맹단체의 장이 선발하고 장애인체육회에 보고함

6. 제출서류

- ① 응시원서(이력서, 자기소개서 포함) 1부
- ② 자격증 사본 및 각종 증빙서류 각 1부
- ③ 경력증명서 각 1부
 -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: 시도장애인체육회(탁구실업팀) 및 기타 장애인 경기 지도 확인서 정확한 날짜 기재(20xx.xx.xx~20xx.xx.xx.) 00년 00개월
- ④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 동의서 1부

7. 서류접수

- 지원서 양식: 별첨문서 참조
- 접수기간: 2023년 6월 10일(토)~6월 19일(월) 13시까지
- 접수방법: 이메일 접수 (등기우편 및 방문접수 불가)
 - 이메일 : kttad@hanmail.net
 - 메일 제목 : '[2023 국가대표 트레이너 지원] OOO(이름) 지원서 제출'

8. 전형일정(안)

- 공고일자: 2023년 6월 10일(토) 본 회 홈페이지 공지
- 서류접수: 2023년 6월 10일(토)~6월 19일(월) 13시까지
- 면접전형 대상자 발표 : 2023년 6월 19일(월) / 개별 안내 예정
- 면접전형(트레이너) : 미정 / 장소 및 시간 개별안내 예정
- 합격자발표 : 미정 / 본 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 게재예정
 - ※ 적격자 없을 시, 차후 재공고가 진행될 수 있음
 - ※ 국가대표 선발규정 제11조(국가대표 선발의 이의신청)에 의거하여, 합격자 발표 후, 10일 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둠

제11조(국가대표 선발의 이의 신청) <신설 '20.10.29.>

- ① 가맹단체의 장은 선발된 국가대표의 명단을 공개한 후 10일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두어야 한다.
- ② 가맹단체의 장은 이의를 신청한 사람에게 미원사무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결과를 회신

하고, 그 처리내용을 장애인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③ 다음 각 호의 사람은 국가대표 선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.

1. 해당 가맹단체에 등록된 선수

2. 국가대표 선발전에 출전한 선수의 보호자, 지도자, 소속팀의 장

9. 기타사항

- 모든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.
-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. 누락, 허위기재 및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.
-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최종합격자를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.
-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사, 채용신체검사, 기타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- 응시자가 없거나 미달 시 재공고를 실시하며, 그 후에도 없을 시 본 협회에서 선임할 수 있습니다.
- 외국어로 된 서류는 번역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한장애인탁구협회(02-477-5446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